#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36 발의연월일: 2025. 3. 25.

발 의 자:윤준병·신영대·박민규

박홍배 • 조계원 • 정동영

문대림 · 김한규 · 민병덕

김태년 • 허종식 • 황명선

송옥주 의원(13인)

###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어 그 직무 수행에 대한 외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임.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기관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드러난 인사비리 등을 보면 내부 감사에 신뢰를 가지기는 어려움.

이에, 직무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되, 1명의 위원 이외에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 주요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둠(안 제15조의4제1항 신설).

- 나.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1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으로, 1명은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함(안 제15조의4제3항 신설).
- 다. 감사위원회 위원(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법관 및 감사원 공무원인 위원 제외)은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소속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소속 공무원의 친인척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의4제4항 신설).
- 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함. 다만, 선거관리위원 회 공무원, 법관 및 감사원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음(안 제15조의4제5항 신설).
- 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4제 6항 신설).

#### 법률 제 호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4(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 1. 선거 · 정당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 주요 사무
  - 2. 인사채용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무
  -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행위
  - 4. 성범죄 사건
  - 5. 국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요구 사항
  - 6. 감사위원회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 7.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3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

무원 1명

-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
- 3.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
-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원을 제외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
-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 4.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관된 직무를 하거나 하였던 사람. 이 경우 연관된 직무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이 경우 위원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⑧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5조의4(감사위원회) ① 선거관 리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감사 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이하 "감 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선거·정당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 주요 사무 2. 인사채용 및 예산집행에 관 한 사무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 령,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행 외 4. 성범죄 사건 5. 국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요구 사항 6. 감사위원회가 감사가 필요하 다고 의결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3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
-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 명
- 3.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
-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원을 제외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 여성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 부한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 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 속 공무원
-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

   속 공무원의 「민법」 제777

   조에 따른 친족
-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

<u>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u> <u>람</u>

- 4.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관된 직무를 하거나 하였던 사람. 이경우 연관된 직무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감사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 3항 후단에 따른 위원은 위원 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⑧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 ⑨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

#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